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08-21호

방송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7호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른 방송평가 및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송평가의 원칙)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평가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방송평가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평가위원회를 둔다.

②방송평가위원회는 위원회 위원과 방송평가위원회의 설치목적에 합치하는 전문가 등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④방송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며,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자격)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1. 방송 등 언론관계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률, 행정, 경영, 회계, 기술, 신문방송 관련 학과의 대학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3. 법조계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4. 공인회계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자
5. 시청자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6. 기타 방송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활동하였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방송평가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무원(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교육공무원, 국회공무원, 법관은 제외)
2. 정당법에 의한 정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4.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방송현업에 종사한 자

제6조(방송평가위원회 직무) 방송평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송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2.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 제안
3. 기타 방송평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처리

제7조(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의 의무 등) ①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방송평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방송평가위원회 운영) ①방송평가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임시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나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방송평가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방송평가위원회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9조(방송사업자 운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운영영역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된 방송사업자 운영평가단(이하 “운영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평가단은 다음 각호의 자격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1. 경영, 회계, 신문방송 관련 학과의 대학 교수
2.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3. 공기업 경영평가 등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운영평가단은 방송사업자 운영평가의 전문적 분야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연구용역을 수행한다.

④ 운영평가단은 부여된 업무가 완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견 청취) 방송평가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방송사업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방송평가위원회 위원 대우)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 기타 실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대상) 방송평가 대상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

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한다.

제13조(평가대상 기간) ①방송평가 대상 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②재허가 추천 또는 재승인 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특정 연도 전체를 평가대상 기간으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평가가 가능한 해당 연도의 특정 시기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평가영역) 방송평가 영역은 내용, 편성, 운영으로 구분하며, 각 영역별 평가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내용영역에서는 개별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방송프로그램의 질 및 방송내용과 관련된 운영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2. 편성영역에서는 대상별 편성비율의 적절성 및 대상별 시간량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3. 운영영역에서는 방송사업자의 운영일반 및 경영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제15조(평가항목 및 평가척도 등) ①평가영역별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과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 및 평가척도는 별표와 같다.

②방송사업자의 특성으로 인해 특정의 평가항목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을 제외하고 평가하되, 평가점수는 각 평가영역에 부여된 만점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③내용 및 편성영역의 평가항목은 해당 방송사업자의 자체제작 여

부와 관계없이 방송된 모든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척도를 적용한다.

제16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위원회는 방송평가업무에 필요한 경우, 방송사업자에게 평가항목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사업자에 대해 해당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할 수 있다.

1. 방송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방송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해당 평가항목을 평가하기 어렵거나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없어 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게 자료의 보완, 사실의 확인 및 기타 평가를 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방송사업자가 이에 불응, 거부하는 경우
3. 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방송사업자가 자료의 보완, 사실의 확인 및 기타 제반 조치를 취하였으나 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해당 평가항목에 대해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방송사업자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 기타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방송평가결과의 공표) ①위원회는 방송의 공익성 증진 및 방송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해 매년 방송평가결과에 대해 방송평가 편람을 작성하여야 하며, 방송평가결과에 대해 연간 단위로 공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평가결과 공표시 평가결과에 따라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보칙)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 대한 평가는 2009년에 실시하는 2008년 방송평가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지상파방송사업자(텔레비전방송)

■ 평가항목 및 척도(만점 900점)

① 내용영역(300점)

평가항목	배점 (300점)	평가척도
프로그램 질 평가	70	※ 평가대상 : 자체편성비율 50% 이상인 종합편성 방송사업자 - 수용자평가조사에 의한 프로그램 질 평가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30	- 수상횟수 및 시상기관에 따른 종합 평가
자체심의 운영실적	30	- 자체심의기구의 전문성 및 실효성 있는 심의시스템 구축 여부 종합 평가 ·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 여부, 대본 심의 및 제작물 심의 비율, 심의시기,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 여부, 월평균 1인당 심의 건수 등을 평가
시청자불만 처리의 적절성	30	-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불만에 대한 처리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시청자 불만처리 전담 부서 여부, 방송사에 접수된 시청자 불만 처리 절차(불만접수와 처리 과정의 효율성) 등 평가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20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종합 평가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내용 평가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시간대 평가
시청자위원회	20	- 시청자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 구성의 적절성 : 방송법령에 의한 추천단체의 추천 여부, 시청자위원 정족수 구성 여부 · 운영현황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여부, 시청자위원 제시 의견 활용 여부, 매월 정기회의 개최 여부, 월간 운영실적 제출 및 보고시한 준수 여부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100	-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건당 주의 1점 / 경고 2점/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각 4점, 병과시 6점/시정명령 10점/과태료 12점/과징금 부과시 ① 방송법 제10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 위반인 경우 : 20점 감점 ② 방송법 제100조제3항제3호 위반인 경우 : 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② 편성영역(300점)

평가항목	배점 (300점)	평가척도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	60	<p>※ 평가대상 : 자체편성비율 50% 이상인 종합편성 방송사업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락편성 비율 60% 미만을 만점으로 9등급 평가 · 60% 미만 : 60점, 60% 이상 ~ 61.5% 미만 : 52.5점, 61.5% 이상 ~ 63% 미만 : 45점, 63% 이상 ~ 64.5% 미만 : 37.5점, 64.5% 이상 ~ 66% 미만 : 30점, 66% 이상 ~ 67.5% 미만 : 22.5점, 67.5% 이상 ~ 69% 미만 : 15점, 69% 이상 ~ 70% 미만 : 7.5점, 70% 이상 : 0점
지역방송사 자체제작비율	60	<p>※ 평가대상 : KBS 지역총국, 지역MBC, 지역민방(자체편성비율 50% 이상인 종합편성 방송사업자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 지역총국 : 자체제작비율 10%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 지역 MBC : 자체제작비율 15%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 지역 민방 : 자체제작비율 20%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외주제작 비율준수 여부 -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비율 준수 여부 - 주시청시간대 외주제작 비율 준수 여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준수 여부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비율 준수 여부

평가항목	배점 (300점)	평가척도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방송시간 대비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비율(30점) : 8%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 8.0% 이상 : 30점, 7.0% 이상 ~ 8.0% 미만 : 26.25점, 6.0% 이상 ~ 7.0% 미만 : 22.50점, 5.0% 이상 ~ 6.0% 미만 : 18.75점, 4.0% 이상 ~ 5.0% 미만 : 15.00점, 3.0% 이상~ 4.0% 미만 : 11.25점, 2.0% 이상 ~ 3.0% 미만 : 7.50점, 1.0% 이상~ 2.0% 미만 : 3.75점, 1.0% 미만 : 0점 - 전체 방송시간 대비 어린이 교육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 편성비율(30점) : 4%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 4.0% 이상 : 30점, 3.5% 이상 ~ 4.0% 미만 : 26.25점 3.0% 이상 ~ 3.5% 미만 : 22.50점, 2.5% 이상 ~ 3.0% 미만 : 18.75점, 2.0% 이상 ~ 2.5% 미만 : 15.00점, 1.5% 이상 ~ 2.0% 미만 : 11.25점, 1.0% 이상 ~ 1.5% 미만 : 7.50점, 0.5% 이상 ~ 1.0% 미만 : 3.75점, 0.5% 미만 : 0점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편성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막방송 편성비율(24점) : 50%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 50% 이상 : 24점, 45% 이상 ~ 50% 미만 : 21점, 40% 이상 ~ 45% 미만 : 18점, 35% 이상 ~ 40% 미만 : 15점, 30% 이상 ~ 35% 미만 : 12점, 25% 이상 ~ 30% 미만 : 9점, 20% 이상 ~ 25% 미만 : 6점, 15% 이상 ~ 20% 미만 : 3점, 15% 미만 : 0점 - 수화방송 편성비율(24점) : 5%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 5% 이상 : 24점, 4.2% 이상 ~ 5% 미만 : 21점, 3.5% 이상 ~ 4.2% 미만 : 18점, 2.8% 이상 ~ 3.5% 미만 : 15점 2.1% 이상 ~ 2.8% 미만 : 12점, 1.4% 이상 ~ 2.1% 미만 : 9점, 0.7% 이상 ~ 1.4% 미만 : 6점, 0% 이상 ~ 0.7% 미만 : 3점, 0% : 0점 - 화면해설방송 편성비율(12점) : 5%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 5% 이상 : 12점, 4.2% 이상 ~ 5% 미만 : 10.5점, 3.5% 이상 ~ 4.2% 미만 : 9점, 2.8% 이상 ~ 3.5% 미만 : 7.5점 2.1% 이상 ~ 2.8% 미만 : 6점, 1.4% 이상 ~ 2.1% 미만 : 4.5점, 0.7% 이상 ~ 1.4% 미만 : 3점, 0% 이상 ~ 0.7% 미만 : 1.5점, 0% : 0점
재난방송 편성 및 실시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방송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

③ 운영영역(300점)

평가항목	배점 (300점)	평가척도
경영의 적정성	40	- 예산편성지침과 편성절차의 합리성 및 준수 여부 - 예산과 실적 차이분석과 적시에 피드백하는지 여부 - 예산과 중장기 경영 계획과의 연계성
재무의 건전성	40	-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영업이익율, 총자산순이익율, 매출액 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등을 평가
자회사(계열사) 평가 결과 활용의 적정성	30	- 자회사 평가지표의 합리성 - 자회사 평가방법의 적정성 - 자회사 평가결과 활용의 적정성
인적자원 개발 투자	30	- 직무와 연관있는 정규 교육, 직무 향상 신기술 교육, 방송교육, 상시적 기술 교육 등에 대한 평가 - 1인당 교육비, 교육비/매출액
방송기술 투자	30	-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시설운용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가
공정거래 준수	30	-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거래 관련 조치사항 또는 조치사항 이행 여부 평가
방송법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30	- 위반 건수에 따른 평가
장애인 고용	20	- 장애인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고용시 만점 부여
여성 고용	20	- 여성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 : 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가중치 부여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운영 여부	30	-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적정성 - 내부 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 - 주요 경영사항 공시의 적시성과 충분성

2. 지상파방송사업자(라디오방송)

■ 평가항목 및 척도(만점 500점)

① 내용 및 편성 영역(250점)

- 적용 대상 : 독립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및 지상파TV·라디오 겸영사업자

평가항목	배점 (250점)	평가척도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30	- 수상횟수 및 시상기관에 따른 종합 평가
자체심의 운영실적	50	- 자체심의기구의 전문성 및 실효성 있는 심의시스템 구축 여부 종합 평가 ·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 여부,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 여부, 월평균 1인당 심의 건수 등을 평가
시청자불만 처리의 적절성	30	-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불만에 대한 처리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시청자 불만처리 전담 부서 여부, 방송사에 접수된 시청자 불만 처리 절차(불만접수와 처리 과정의 효율성) 등 평가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90	-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건당 주의 1점/ 경고 2점/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 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각 4점, 병과시 6점/ 시정 명령 10점/ 과태료 12점/ 과징금 부과시 ① 방송법 제10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 위반인 경우 : 20점 감점 ② 방송법 제100조제3항제3호 위반인 경우 : 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재난방송 편성 및 실시	50	- 재난방송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

② 운영영역(250점)

- 적용 대상 : 독립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 지상파 TV·라디오 겸영사업자의 라디오 운영평가는 TV 평가결과를 적용

평가항목	배점 (250점)	평가척도
경영의 적정성	40	- 예산편성지침과 편성절차의 합리성 및 준수 여부 - 예산과 실적 차이분석과 적시에 피드백하는지 여부 - 예산과 중장기 경영 계획과의 연계성
재무의 건전성	40	-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영업이익율, 총자산순이익율, 매출액 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등을 평가
인적자원 개발 투자	30	- 직무와 연관있는 정규 교육, 직무 향상 신기술 교육, 방송교육, 상시적 기술 교육 등에 대한 평가 - 1인당 교육비, 교육비/매출액
방송기술 투자	30	-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시설운용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가
공정거래 준수	10	-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거래 관련 조치 사항 또는 조치사항 이행 여부 평가
방송법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30	- 위반 건수에 따른 평가
장애인 고용	20	- 장애인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고용시 만점 부여
여성 고용	20	- 여성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 : 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가중치 부여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운영 여부	30	-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적정성 - 내부 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 - 주요 경영사항 공시의 적시성과 충분성

3.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 평가항목 및 척도(만점 500점)

① 내용 및 편성 영역(200점)

평가항목	배점 (200점)	평가척도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10	- 수상횟수 및 시상기관에 따른 종합 평가
자체심의 운영실적	10	- 자체심의기구의 전문성 및 실효성 있는 심의시스템 구축 여부 종합 평가 ·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 여부,大本 심의 및 제작물 심의 비율, 심의시기,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 여부, 월평균 1인당 심의 건수 등을 평가
시청자불만 처리의 적절성	50	-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불만에 대한 처리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시청자 불만처리 전담 부서 여부, 방송사에 접수된 시청자 불만 처리 절차(불만접수와 처리 과정의 효율성) 등 평가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60	-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건당 주의 1점/ 경고 2점/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 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각 4점, 병과시 6점/ 시정 명령 10점/ 과태료 12점/ 과징금 부과시 ① 방송법 제10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 위반인 경우 : 20점 감점 ② 방송법 제100조제3항제3호 위반인 경우 : 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직접제작·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30	- 지역채널이나 직접사용채널에 대한 직접제작 또는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실적을 평가(녹음·녹화 채널은 0점) - 지역채널의 액세스 프로그램 편성시간량 및 액세스 프로그램 활성화 노력 (※평가대상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40	-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현황 평가 (※평가대상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② 운영영역(300점)

평가항목	배점 (300점)	평가척도
재무의 건전성	30	-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영업이익율, 총자산순이익율, 매출액 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등을 평가
인적자원 개발 투자	30	- 직무와 연관있는 정규 교육, 직무 향상 신기술 교육, 방송교육, 상시적 기술 교육 등에 대한 평가 - 1인당 교육비, 교육비/매출액
방송기술 투자	30	-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시설운영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가
공정거래 준수	40	-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거래 관련 조치사항 또는 조치사항 이행 여부 평가
방송법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30	- 위반 건수에 따른 평가
장애인 고용	15	- 장애인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고용시 만점 부여
여성 고용	15	- 여성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 : 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가중치 부여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운영 여부	40	-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적정성 - 내부 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 - 주요 경영사항 공시의 적시성과 충분성 - 사외이사 운영 현황 - 소액주주 보호장치 - 세무조사에 의한 조치 결과
수신료 배분의 적정성	40	-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용요금 약관' 승인시 제출된 수신료 배분 기준 준수 여부 평가
채널공급계약시 선정기준 적정성	30	-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의 신규채널 계약이나 기존 채널 재계약시 객관적 선정 기준 유무 및 선정기준의 적정성

4.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분야)

■ 평가항목 및 척도(만점 500점)

① 내용 및 편성 영역(250점)

평가항목	배점 (250점)	평가척도
자체심의 운영실적	50	- 자체심의기구의 전문성 및 실효성 있는 심의시스템 구축 여부 종합 평가 ·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 여부,大本 심의 및 제작물 심의 비율, 심의시기,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 여부, 월평균 1인당 심의 건수, 공정보도를 위한 자체 노력 여부 등을 평가
시청자불만 처리의 적절성	20	-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불만에 대한 처리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시청자 불만처리 전담 부서 여부, 방송사에 접수된 시청자 불만 처리 절차(불만접수와 처리 과정의 효율성) 등 평가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40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종합 평가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내용 평가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시간대 평가
시청자위원회	40	- 시청자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 구성의 적절성 : 방송법령에 의한 추천단체의 추천 여부, 시청자위원 정족수 구성 여부 · 운영현황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여부, 시청자위원 제시 의견 활용 여부, 매월 정기회의 개최 여부, 월간 운영실적 제출 및 보고시한 준수 여부
방송심의 관련 규정 준수	60	-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건당 주의 1점/ 경고 2점/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각 4점, 병과시 6점 / 시정명령 10점/ 과태료 12점/ 과징금 부과시 ① 방송법 제10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 위반인 경우 : 20점 감점 ② 방송법 제100조제3항제3호 위반인 경우 : 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재난방송 편성 및 실시	40	- 재난방송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

② 운영영역(250점)

평가항목	배점 (250점)	평가척도
경영의 적정성	40	- 예산편성지침과 편성절차의 합리성 및 준수 여부 - 예산과 실적 차이분석과 적시에 피드백 하는지 여부 - 예산과 중장기 경영 계획과의 연계성
재무의 건전성	40	-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영업이익율, 총자산순이익율, 매출액 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등을 평가
인적자원 개발 투자	30	- 직무와 연관있는 정규 교육, 직무 향상 신기술 교육, 방송교육, 상시적 기술교육 등 에 대한 평가 - 1인당 교육비, 교육비/매출액
방송기술 투자	30	-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시설운영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가
공정거래 준수	10	-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거래 관련 조치사항 또는 조치사항 이행 여부 평가
방송법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30	- 위반 건수에 따른 평가
장애인 고용	20	- 장애인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고용시 만점 부여
여성 고용	20	- 여성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 : 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가중치 부여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운영 여부	30	-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적정성 - 내부 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 - 주요 경영사항 공시의 적시성과 충분성

5. 방송채널사용사업자(홈쇼핑분야)

■ 평가항목 및 척도(만점 500점)

① 내용 및 편성 영역(250점)

평가항목	배점 (250점)	평가척도
방송심의관련 제규정 준수	120	-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건당 주의 1점 / 경고 2점/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각 4점, 병과시 6점/ 시정명령 10점/ 과태료 12점/ 과징금 부과시 ① 방송법 제10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 위반인 경우 : 20점 감점 ② 방송법 제100조제3항제3호 위반인 경우 : 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자체심의 운영실적	50	- 자체심의기구의 전문성 및 실효성 있는 심의시스템 구축 여부 종합 평가 ·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 여부, 대본 심의 및 제작물 심의 비율, 심의시기,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 여부, 월평균 1인당 심의 건수 등을 평가
소비자 및 시청자 불만 처리의 적절성	50	-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소비자 및 시청자 불만에 대한 처리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소비자 및 시청자 불만처리 전담 부서 여부, 방송사에 접수된 소비자 및 시청자 불만 처리 절차(불만접수와 처리 과정의 효율성) 등 평가
재난방송 편성 및 실시	10	- 재난방송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20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여부 및 편성 현황 -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현황

② 운영영역(250점)

평가항목	배점 (250점)	평가척도
인적자원 개발 투자	40	- 직무와 연관있는 정규 교육, 직무 향상 신기술 교육, 방송교육, 상시적 기술교육 등에 대한 평가 - 1인당 교육비, 교육비/매출액
방송기술 투자	40	-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시설운영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가
공정거래 준수	30	-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거래 관련 조치사항 또는 조치사항 이행 여부 평가
방송법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30	- 위반 건수에 따른 평가
장애인 고용	20	- 장애인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고용시 만점 부여
여성 고용	20	- 여성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 : 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가중치 부여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운영 여부	40	-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적정성 - 내부 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 - 주요 경영사항 공시의 적시성과 충분성 - 사외이사 운영 현황 - 소액주주 보호장치 - 세무조사에 의한 조치 결과
상품 선정기준의 적정성	30	- 상품(납품업자) 선정시 객관적 선정 기준 유무 및 선정기준의 적정성

6.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텔레비전방송)

■ 평가항목 및 척도(만점 500점)

① 내용 및 편성 영역(250점)

평가항목	배점 (250점)	평가척도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20	- 수상횟수 및 시상기관에 따른 종합 평가
자체심의 운영실적	30	- 자체심의기구의 전문성 및 실효성 있는 심의시스템 구축 여부 종합 평가 ·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 여부, 대본 심의 및 제작물 심의 비율, 심의시기,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 여부, 월평균 1인당 심의 건수 등을 평가
시청자불만 처리의 적절성	30	-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불만에 대한 처리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시청자 불만처리 전담 부서 여부, 방송사에 접수된 시청자 불만 처리 절차(불만접수와 처리 과정의 효율성) 등 평가
시청자위원회	20	- 시청자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 구성의 적절성 : 방송법령에 의한 추천단체의 추천 여부, 시청자위원 정족수 구성 여부 · 운영현황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여부, 시청자위원 제시 의견 활용 여부, 매월 정기회의 개최 여부, 월간 운영실적 제출 및 보고시한 준수 여부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70	-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건당 주의 1점 / 경고 2점/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각 4점, 병과시 6점/시정명령 10점/과태료 12점/과징금 부과시 ① 방송법 제10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 위반인 경우 : 20점 감점 ② 방송법 제100조제3항제3호 위반인 경우 : 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재난방송 편성 및 실시	40	- 재난방송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용 프로그램 편성	40	- 이동멀티미디어방송용 프로그램 편성실적 종합 평가

② 운영영역(250점)

평가항목	배점 (250점)	평가척도
재무의 건전성	30	-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영업이익율, 총자산순이익율, 매출액 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등을 평가
인적자원 개발 투자	30	- 직무와 연관있는 정규 교육, 직무 향상 신기술 교육, 방송교육, 상시적 기술 교육 등에 대한 평가 - 1인당 교육비, 교육비/매출액
방송기술 투자	40	-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시설운용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가
공정거래 준수	30	-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거래 관련 조치 사항 또는 조치사항 이행여부 평가
방송법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40	- 위반 건수에 따른 평가
장애인 고용	20	- 장애인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고용시 만점 부여
여성 고용	20	- 여성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 : 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가중치 부여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운영 여부	40	-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적정성 - 내부 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 - 주요 경영사항 공시의 적시성과 충분성

7.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라디오방송)

■ 평가항목 및 척도(만점 500점)

① 내용 및 편성 영역(250점)

평가항목	배점 (250점)	평가척도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20	- 수상횟수 및 시상기관에 따른 종합 평가
자체심의 운영실적	30	- 자체심의기구의 전문성 및 실효성 있는 심의시스템 구축 여부 종합 평가 ·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 여부,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여부, 월평균 1인당 심의 건수 등을 평가
시청자불만 처리의 적절성	30	-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불만에 대한 처리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시청자 불만처리 전담 부서 여부, 방송사에 접수된 시청자 불만 처리 절 차(불만접수와 처리 과정의 효율성) 등 평가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90	-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건당 주의 1 점/ 경고 2점/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각 4점, 병과시 6점/ 시정명령 10점/ 과태료 12점/ 과징금 부과시 ① 방송법 제100조제3항제1호 또 는 제2호 위반인 경우 : 20점 감점 ② 방송법 제100조제3항제3호 위반인 경우 : 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 점함)
재난방송 편성 및 실시	40	- 재난방송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용 프로그램 편성	40	- 이동멀티미디어방송용 프로그램 편성실적 종합 평가

② 운영영역(250점)

평가항목	배점 (250점)	평가척도
재무의 건전성	30	-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영업이익율, 총자산순이익율, 매출액 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등을 평가
인적자원 개발 투자	30	- 직무와 연관있는 정규 교육, 직무 향상 신기술 교육, 방송교육, 상시적 기술 교육 등에 대한 평가 - 1인당 교육비, 교육비/매출액
방송기술 투자	40	-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시설운용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가
공정거래 준수	30	-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거래 관련 조치 사항 또는 조치사항 이행 여부 평가
방송법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40	- 위반 건수에 따른 평가
장애인 고용	20	- 장애인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고용시 만점 부여
여성 고용	20	- 여성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 : 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가중치 부여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운영 여부	40	-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적정성 - 내부 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 - 주요 경영사항 공시의 적시성과 충분성

8.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 평가항목 및 척도(만점 500점)

① 내용 및 편성 영역(200점)

평가항목	배점 (200점)	평가척도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20	- 수상횟수 및 시상기관에 따른 종합 평가
자체심의 운영실적	20	- 자체심의기구의 전문성 및 실효성 있는 심의시스템 구축 여부 종합 평가 ·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 여부,大本 심의 및 제작물 심의 비율, 심의시기,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 여부, 월평균 1인당 심의 건수 등을 평가
시청자불만 처리의 적절성	50	-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불만에 대한 처리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시청자 불만처리 전담 부서 여부, 방송사에 접수된 시청자 불만 처리 절차(불만접수와 처리 과정의 효율성) 등 평가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50	-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건당 주의 1점/ 경고 2점/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각 4점, 병과시 6점/ 시정명령 10점/ 과태료 12점/ 과징금 부과시 ① 방송법 제10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 위반인 경우 : 20점 감점 ② 방송법 제100조제3항제3호 위반인 경우 : 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재난방송 편성 및 실시	20	- 재난방송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용 프로그램 편성	40	- 이동멀티미디어방송용 프로그램 편성실적 종합평가

② 운영영역(300점)

평가항목	배점 (300점)	평가척도
재무의 건전성	30	-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영업이익율, 총자산순이익율, 매출액 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등을 평가
인적자원 개발 투자	30	- 직무와 연관있는 정규 교육, 직무 향상 신기술 교육, 방송교육, 상시적 기술교육 등에 대한 평가 - 1인당 교육비, 교육비/매출액
방송기술 투자	40	-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시설운영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가
공정거래 준수	30	-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거래 관련 조치사항 또는 조치사항 이행 여부 평가
방송법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30	- 위반 건수에 따른 평가
장애인 고용	15	- 장애인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고용시 만점 부여
여성 고용	15	- 여성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 : 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가중치 부여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운영 여부	40	-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적정성 - 내부 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 - 주요 경영사항 공시의 적시성과 충분성 - 사외이사 운영 현황 - 소액주주 보호장치 - 세무조사에 의한 조치 결과
수신료 배분의 적정성	40	-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용요금 약관' 승인시 제출된 수신료 배분 기준 준수 여부 평가
채널공급계약시 선정기준 적정성	30	-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의 신규채널 계약이나 기존 채널 재계약시 객관적 선정기준 유무 및 선정기준의 적정성